

3. 선임방법 :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
제 목 :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.

1. 출석일자 : 1995.12.4(월)~12.6(수)[3일간]
2. 출석대상 :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
3. 출석요구이유 : 구정에 관한 질문

요 구 자 : 홍성환의원 외 7인